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 제정 : 1998. 06. 04

□ 개정 : 2015. 0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보존 한다.

②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 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용 시설의 구조변경
2. 교육용 토지의 형질변경
3. 교육용 토지내 수목의 벌채
4.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 차량, 보일러 등의 철거 및 매각
5. 교육용 재산의 장기 대여
6. 기타 이사장이 법인 관리·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 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중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과 설비도 포함되며, 이의 조성과 확보전에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회계)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고운학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학칙변경(학생정원의 증·감, 학과·대학·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등)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규칙의 인준
3.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 조정, 폐지
4. 학교의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증축
5.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익사업의 종류) 정관 제36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부대시설 임대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1-0-2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같다.

1. 간이골프장 임대
2. 주차장 임대
3. (삭제)

제7조(시행세칙의 개·폐) 이 세칙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시행 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